

문서번호	감사담당관-63 62
결재일자	2016.5.1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감사팀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	구청장
문태훈	전대영	김영춘	하철승	05/19 박경수
협 조	법무팀장	이기호		
	민원조사팀장	代서창석		
	주무관	송수연	기획예산과장	조상연



서울특별시 강북구

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

2016.5.18.



강 북 구

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계획

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과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, 강북구 공무원의 청렴성을 강조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고자 함.

I. 관련 근거
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법률 제12844호
- 「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00호, 2016.3.10.
-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서울특별시규칙 제3476호, 2016.2.18.

II. 개정 이유

-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청렴도·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강북 구현
- 부정청탁 금지 조항,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등 거래제한 대상자 및 행위 내용 확대,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규정마련으로 공직기강 강화

III. 주요 내용

- 공정한 직무수행
 - 부정청탁 금지 및 부정청탁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(안 제5조, 안 제6조)
 -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규정 내용 확대 (안 제7조)
 - 인사청탁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8조)

■ 부당 이익 수수 금지

- 알선·청탁 등 금지 규정 신설 (안 제10조)
- 직무관련자와의 거래행위 등 거래제한 대상자 및 행위 내용 확대 규정 신설 (안 제12조)

■ 이해관계 독립성 유지

-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 확대 규정 신설 (안 제18조)

■ 외부강의 기준

- 외부강의 등 횟수·시간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20조)
- 외부강의 대가기준 초과 금액 조치 규정 신설 (안 제20조)

■ 별표

-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정 (별표 1)
-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개정 (별표 2)

IV. 추진 일정

■ 관계부서 사전협의(부패영향·성별영향분석) : 2016. 4. 26. ~ 4. 29.

■ 법제심사 의뢰 : 2016. 5. 10. ~ 5. 17.

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2016. 5. 25.(예정)

■ 공포 및 시행 : 2016. 6월 중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 1부
2. 관계법령 발췌문 1부
3. 상급기관 관련 공문 1부. 끝.